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018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강대식 · 김장겸 · 구자근
김기현 · 이인선 · 강선영
나경원 · 서천호 · 김은혜
정점식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3조의3 각 호”를 “제3조의3제1항 각 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의3(<u>결격사유</u>)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 <p>제3조의3(<u>결격사유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거나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p>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p> | <p>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p> <p>-----</p> <p>-----</p> |

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 2의3. (생략)
3.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 14. (생략)
- ② (생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3제1항 각 호-----

4. ~ 1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